

1.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제정이유

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보전,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(안 제2조제1항)

나.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하되,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.
(안 제3조)

다. 위탁시에는 위탁기간, 위탁조건,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(안 제4조제1항)

라.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안 제5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제7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하수도법

제7조(공공하수도관리청)

-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(신설 '93. 12. 10)

제18조(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조례안 제4조(위탁계약)에 위탁기간의 적정년도를 명시하여 시의 일방적인 위탁기간 조정으로 인한 시와 수탁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, 수탁자와 불합리한 계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로 한다라고 동 조례안 제2조(운영의 위탁)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하수도에 대한 시설내역과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,
- 적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운영비용이 2억 7,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적성지역의 하수도사용료 징수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.